

대한지리학회 南溪 논문상 규정

2003년 9월 17일 개정
2011년 9월 23일 개정
2013년 11월 22일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지리학회 南溪 논문상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논문과 기간) 논문상의 대상은 국내 각 대학 대학원 지리학과와 지리(교육)전공, 사회과 교육(초등관련), 공통사회과 지리전공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당해 정기총회 직전년도에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으로 한다.

제3조(심사 대상자) 위 논문상의 대상자는 대한지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

제4조(논문상 심사위원회)

- ①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상 심사위원회(이하, '심사위원회'라 함)를 둔다.
-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대한지리학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명하고, 학술부장, 총무부 차장, 국제부 차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을 임명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
 1. 접수된 논문심사의 기본원칙 및 규정
 2. 관련 규정의 개폐
 3.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심의
 4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5조(회의)

-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심사 절차)

- ① 박사학위 소지자는 본 심사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5쪽 이내의 요약서와 학위논문을 제출하고, 위원장은 심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하도록 한다.
- ②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.

제7조(심사위원회의 임기)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대한지리학회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.

제8조(접수와 심사 및 시상) 심사대상 논문의 접수는 매년 4월 중순까지로 하고, 심사는 5월 중순까지로 한다. 시상은 정관 제22조의 정기총회에서 하며,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.

제9조(위임규정) 이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기타 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